

2022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참가기업 모집 공고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라북도 내 기술기반 제조·지식서비스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화 자금 지원 등 통합 패키지 제공을 통해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『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』사업을 운영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2월 18일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

I 모집개요

□ 사업목적

- 전라북도 내 기술기반 제조·지식서비스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화 자금 지원을 통한 성공 창업기업 육성

□ 주요내용

- 공고기간 : 2022. 2. 18.(금) ~ 3. 7.(월) 18:00까지
- 모집기간 : 2022. 2. 21.(월) ~ 3. 7.(월) 18:00까지
- 모집대상
 - 사업화 지원 : 업력 1~3년 이내 창업기업(※ 공고일 기준 업력 1~3년)
 - 사후관리 지원 : 기존『혁신형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』수혜기업
- 선정규모 : 총 30개사 내외(사업화 25개사, 사후관리 5개사)
 - * 지원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내용 : 시제품 개선, 마케팅, 투자유치, 지식재산권 확보, 모의크라우드 펀딩
 - 사업화 지원금 최대 30백만원 (사업성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)
 - 사후관리 지원금 7백만원 (사후관리 기업 해당)
- ※ 자부담 현금 10%, 현물 20%
- 지원기간 : 협약 후 ~ 2022년 10월

Ⅱ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□ 신청자격

-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이며, 업력 1~3년 이내(2019. 2. 18. 이후) 창업기업
- 기존『혁신형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』수혜기업(사후관리 기업 해당)

■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

구분	확인 서류 및 기준
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
법인기업	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

*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,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
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,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(최종 선정자에 한함)

□ 신청제외 기업

- 동 사업의 사업화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- 기 선정 되어 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 및 중단 처분자(기업)
- 동일 아이템으로 타 기관, 지자체 및 중앙부처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(개인, 법인)
-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(기업) ※[참고 1]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
-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
III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- 시제품 개선, 마케팅, 투자유치, 지식재산권 확보, 모의크라우드 펀딩
 - 사업화 지원금 : 최대 30백만원 (사업성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)
 - 사후관리 지원금 : 기업당 7백만원 (사후관리 기업 해당)
- 지원항목

비 목	비목정의
인건비	○ 직원이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
외주용역비	○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재료비	○ 시제품의 부속품 또는 가공(화학적·물리적 작용을 통해)되어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
기자재구입비	○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로써,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 ※지원금의 20%
기자재임차비	○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, 부수 기자재 등을 임차하는 경비
지식재산권 확보비	○ 창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
시험인증비	○ 시험인증비는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·분석·인증에 소요되는 비용
전시회참가비	○ 국내·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, 부스 임차비 등 소요비용
홈페이지 제작비	○ 기업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
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	○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
온라인쇼핑몰 입점료	○ 상품화한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* 앱(APP)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 포함
온라인홍보비	○ 사업 결과물의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
기타 마케팅비	○ 일간지, 정기 간행물의 광고게재, 제품 및 기업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

- 사업비 구성 : 지원금의 30% 자부담(현금 10%, 현물 20%)

<사업비 구성 예시>

총 사업비	지원금	창업기업 자부담	
		현금	현물
3,900만원	3,000만원	300만원	600만원
	100%	10%	20%

IV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2022. 2. 21.(월) ~ 3. 7.(월) 18:00까지

□ 접수방법 : 온라인 신청 플랫폼 접수

- 온라인 신청 플랫폼(<http://event.jbci.or.kr>) - 2022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
참가기업 모집 공고 - 신청하기

- 사업지원 신청 : 공고문, 신청서 다운로드 및 온라인 업로드

- 신청서 수정 및 접수 확인은 공고 마감일까지 가능

※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 접속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,
접수 마감시간 이후 '온라인 신청 플랫폼' 접속이 차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문 의 처 :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063-220-8923 / 8925

□ 제출서류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
○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(필수)
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(필수)

○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(필수)

○ 대표자 신준증 사본(필수)

○ 사실증명(필수)

-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, 사실증명원(총사업자
등록내역), 폐업증명원(해당자)

* 사실증명 발급절차 : 국세청 홈텍스 → 민원증명 → 사실증명신청 →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

○ 실적(매출, 수출, 투자, 고용 등) 증빙서류(기업성과 작성자 해당)

매 출	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
수 출	수출실적 증명원(한국무역협회 발급), 수출계약서, 해외특허등록서, 국제인증서, 국제협약서 등
투 자	투자계약서(투자금액 포함), 투자금액 입금 통장사본 등
고 용	4대보험 가입자 명부

○ 기타 제출서류(아이템 관련 증빙 서류 등)(해당자)

V

신청 절차

□ 선정평가

<선정평가 절차>

1단계 서면평가	2단계 발표평가	최종선정
- 기술 · 사업성 평가 - 전문 평가위원 구성 - 최종선정 기업 1.5~2배수 선발	- 대표자 역량 및 사업화 평가 - 기업 대표 발표 및 질의응답 등 - 전문 평가위원 구성	- 대상기업 선정 및 협약 - 창업지원 및 교육 진행

○ 서면평가

- 평가항목 :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및 시장성, 성장 가능성과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, 대표자 역량 등
- 최종 선정 기업의 1.5 ~ 2배수 선발

○ 발표평가

- 평가항목 : 대표자의 의지와 기업의 역량, 아이টে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화 가능성 등

○ 최종선정 : 최종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사업화지원금 최종 확정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사업공고 2022. 2. 18. ~ 3. 7. 홈페이지	⇒	신청서 접수 2022. 2. 21. ~ 3. 7. 온라인 신청 플랫폼	⇒	결격사유검토 2022. 3. 8. ~ 3. 11.
				↓
1차 이의제기 2022. 3. 18. ~ 3. 21. 심의위원회	⇐	서류평가 통과자 안내 2022. 3. 17. 홈페이지, SNS	⇐	1차 서면평가 2022. 3. 15. ~ 3. 16. 평가위원회
				↓
2차 발표평가 2022. 3. 29. ~ 3. 30.	⇒	지원대상자 및 후보자 안내 2022. 3. 31. 홈페이지	⇒	2차 이의제기 2021. 3. 31. ~ 4. 1. 심의위원회

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VI 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-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발표평가는 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□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참고 1**지원제외 대상 업종**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금융 및 보험업	K64~66
2	부동산업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 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I55~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
6	기타 gambling 및 베팅업	9124
7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참고 2

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(공고일 기준)

□ 창업여부 기준

창업이력	신청기업 구분 (판단기준)	상세 구분			창업여부	
상속/증여	개인 / 법인	기존의 개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여부 무관	동종유지		불인정	
			이종창업		창 업	
창업이력 있음	개인기업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		불인정	
	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		창 업
		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2년 초과		창 업	
			기존 법인사업자 유지			창 업
		기존 법인사업자 폐업			창 업	
	법인기업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	창 업	
			동종창업	동일인인 경우	불인정	
				동일인이 아닌 경우	창 업	
	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법인전환	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		창 업
			이종창업			창 업
			동종창업	동일인인 경우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		부도/파산 2년 초과	창 업
				동일인이 아닌 경우	창 업	
			기존 법인사업자 유지	자회사 해당		
		자회사 해당되지 않음			창 업	
		기존 법인사업자 폐업			창 업	

1. "기존 사업을 폐지하고"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
2.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(5자리)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%를 넘는 경우
3. "동일인"이란,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
 - 가. 법안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(출자지분 포함) 총수의 30% 이상을 소유한 경우
 - 나.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
4. "친족"이란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 포함),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
5. "자회사"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. 이 경우,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
6. 중소기업 폐업이후 3년 이후의 동종 업종 개시는 창업 인정(부도·파산 2년)
7.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